

## 장애학생지원센터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교에서 수학하는 장애학생의 학업 및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원활한 대학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2. “장애학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된 학생 및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역할 및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직원·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

### 제 2 장 조 직

**제4조(조직)** ① 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센터장을 두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장은 학생처장이 겸직하며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총괄 지휘한다.

### 제 3 장 학생관리 및 학습지원

**제5조(학습지원)** 장애학생의 학습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강신청 및 수업지원 도우미
2. 장애학생 학습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
3. 기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필요한 사항

**제6조(학생생활 지원)** 장애학생의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3. 16.)

1. 학부(과) 활동 등의 대학생활 및 편의시설
2. 장애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개인상담, 진로심리상담
3. 기타 학생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학생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 4 장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 제8조(장애 학생 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학생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기획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입학처장, 대학원장, 총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된다.(개정 2015. 5. 1, 2020. 3. 16.)
- ④ 위촉위원은 교직원 중에서 학생처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생활·복지에 관한 사항
  3. 장애학생의 편의시설 설치 및 확충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의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6.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
- ⑥ 위원회의 사무를 돕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생팀장이 된다.(개정 2015. 5. 1)

## 제 5 장 재 정

**제9조 (재정)** 본 지원센터의 재원은 본교로부터의 정규예산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0조 (예·결산)** 본 지원센터의 예·결산에 관한 제반사항은 본교 예·결산규정에 따른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2015. 5. 1)

**제1조(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조직개편에 따라 ‘입학관리처’를 ‘입학처’로, ‘행정지원처’를 ‘사무처’로 ‘학생지원팀’을 ‘학생팀’으로 한다.

### 부 칙(2020. 3. 1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